

## 충남연구원 부패방지 방침

충남연구원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신뢰, 공정, 개방, 투명의 가치 속에서 도민, 도정과 소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한다.

1. 충남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은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 편의 및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2. 충남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외부패방지법(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뇌물수수법(영국, Bribery Act)」 등 모든 부패와 관련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령 및 연구원의 규정을 준수한다.
3. 충남연구원장은 부패방지책임자에게 부패 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개선 프로세스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4. 충남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위반을 인지할 경우 즉시 부패방지책임자에게 제보하고, 부패방지책임자는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5. 충남연구원은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규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6. 충남연구원은 부패방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2022년 00월 00일

충남연구원장